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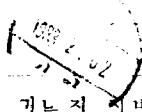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 262 - 2003	전화번호 725-7805	전선규정	조항 전경시인
처리기간	83.1	시 장		
시행일시	83.1			
보존년한	1년			
보조기관	부시장 내무국장 인사과장			
기안책임자	한동완	83.1.20 (조광호)		
경유	각안참조	발신		
제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			
	(제1안) 내부결재			
	<p>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3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p> <p>가. 공고문안 : 별첨 참조</p> <p>나. 공고일 : 1983. 2. 1</p> <p>다. 대상인원 : 351명</p> <p>라. 신청기간 : 1983. 3. 3 - 1983. 3. 22 (20일간)</p>			
	첨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 끝.			
	(제2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동건			

정직 질서 창조
5-1

5-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고,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수당 지급 대상자중 희망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토록 함.



가. 대상자 :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과 소방
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 5급이상 : 1923.1.1 - 1926.12.31 (폐질의 경우 1931.12.31까지 포함)
- 6급이하 : 1929.1.1 - 1932.12.31

(폐질의 경우 1937.12.31까지 포함)

나. 신청기간 : 1983. 3. 3 - 1983. 3. 22(20일간)

다. 작성 요령

- 1) 근속년수 : 수당 신청 게시일 기준
- 2) 정년일 : 6월말(당해년도 1.1 - 6.30까지 출생자)
12월말(당해년도 7.1 - 12.31까지 출생자)
- 3)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지급 신청 게시일부터 정년일
- 4) 퇴직하고 자하는 시기 : 결정통지일부터 20일 이내
- 5) 수당 청구액 산출내역
 - 일반퇴직 : 퇴직월 봉급액 × 1/2 × 잔여월수
 - 상병퇴직 : 퇴직월 봉급액 × 1/2 × 지급규정 배수
- 6) 정년 잔여기간 계산 : 15일이상은 1월,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상병퇴직자는 6월이상은 1년, 6월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첨부 :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
2. 수당 지급신청서 1부. 끝.

수신처 : 시산하 전기관

제3안

수신 공보관

발신 : 네무국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3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공고를 별첨 공고
문과 같이 시보에 게재코저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 1983. 2. 1.

나. 공고문 : 별첨 참조

첨부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 끝.

시영

공 고 문 (안)

결정일자	1983. 2. 2	제 2
상(하)장	장	장
	장	장

서울특별시 공 고 문 (안)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3년도 상반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3. 2. 1

서울특별시 장

1. 수당 지급 대상 대상자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소방공무원과 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으로서 수당지급 공시일 전직 20년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정년퇴직인전 1년이상 5년이내에 작진 퇴직하는 자

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작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인
 전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2. 수당 지급 대상 인원 : 351명

3. 수당 지급 신청

가. 신청기간 : 1983. 3. 3 - 1983. 3. 22

나. 신청 절차 : 수당지급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구비
 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경정 및 지급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한다.

5. 소방직급 대상자의 시직연 제한

봉직을 받은 소방 직급 대상자는 그 봉직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내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직연은 제한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직방공무원 명예퇴직 소방 직급공정을 참고
하라. 가람. 물.